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0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서울시의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시민과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등 공공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명칭 및 위치)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나. 행려환자 등 의료취약층의 치료경험이 풍부하고 시민보건향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보고('17.6.19)로 진행되어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시민보건향상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달성하고 동시에 병원 경영이라는 수익성을 부가적으로 추구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성과 다년간의 공공의료 기관의 성공적 운영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시민과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시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전염병예방 등 보건의료사업
-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 의학연구(임상연구 포함)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시설명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용두동)
- 시설규모 : 대지 5,364㎡, 건물 22,825㎡(지하 4층, 지상 6층)
- 지원시설 :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한 종합병원
- 개원일자 : 2004년 3월



- **종별** : 병원
- **층고** : 지하 4층, 지상 6층
 - 외래부 : 진료실, 검사실, 응급실 등
 - 병동부 : 입원실

마. 민간위탁기간

-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총 8,699,401천원('18년 예산)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사 업 별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
합 계	6,688,640	8,699,401
운영보조금	5,106,850	5,639,296
공공의료 손실보전	4,835,037	5,097,840
공공확충사업	271,813	541,456
자본보조금	1,581,790	3,060,105
건물	617,000	100,000
기계장치	130,000	170,000
의료장비	496,500	427,105
차량운반구	38,290	35,000
공기구비품	300,000	2,328,000

※ 세부 산출근거 : 붙임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제13조(준용)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나.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보건의료정책과-19347. '17.6.20)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 신미경 (☎2133 - 7518)

붙임 : 1

- 산출근거

「운영보조금」

▶ 공공의료 손실보전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의료 손실보전	4,204,950	4,604,797	4,835,037	5,097,840

▶ 공공의료확충 사업

- 301보건의료복지네트워크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인건비	249,580	249,580	○ 의사 1명, 301네트워크 인력 4명 - 급여 및 제수당, 퇴직금 포함
관리운영비	23,981	17,480	○ 복리후생비(4대보험 등)
		6,501	○ 기타 운영비
계	273,561	273,561	

- 알코올해독클리닉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인건비	82,922	82,922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명, 의무보조원 2명 - 급여 및 제수당, 퇴직금 포함
관리운영비	7,537	713	○ 복리후생비(4대보험 등)
			○ 기타 운영비
계	90,459	83,635	

▶ 무료간병인 사업(시설환자 병동 도우미)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운영비	157,980	157,980	○ 간병인 : 3,291원 × 4명 × 12개월 = 157,980천원
계	157,980	157,980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운영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운영비	22,580	22,580	○ 3개 종교실 운영 ○ 봉사자 교육 및 봉사 관련 물품 구입 ○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비
계	22,580	22,580	

▶ 건강증진 사업(HPH)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운영비	3,700	37,00	○ 힐링아카데미 및 운영비
계	3,700	3,700	

「자본보조금」

▶ 건물

(단위 : 천원)

연번	구 분	보조금	비고
1	기능환경개선공사(병원 정면 공개공지)	10,000	
계		10,000	

▶ 기계장치

(단위 : 천원)

연번	구 분	보조금	비고
1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130,000	
2	컴프레셔 및 진공펌프 교체	22,000	
3	전산실 향온향습기 교체	15,000	
4	UPS 배터리 교체(소방장비용)	3,000	
계		170,000	

▶ 의료장비

(단위 : 천원)

연번	구 분	보조금	비고
1	의료장비 구입비	427,105	
계		427,105	

▶ 차량운반구

(단위 : 천원)

연번	구 분	보조금	비고
1	업무용 승용차	35,000	
계		35,000	

▶ 공기구비품

(단위 : 천원)

연번	구 분	보조금	비고
1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2,328,000	
계		2,328,000	